P - 45 - 2012

#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태옥 개정자 : 한 우 섭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10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NFPA 430, "Code for the Storage of Liquid and Solid Oxidizers", 2000 Ed., 2000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P - 45 - 2012

##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서 산화제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산화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 및 고체를 사용하는 공정에 적용한다. 다만, 폭발성 물질, 질 산암모늄 및 유기과산화물과 대규모 로켓 전동기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과염소산암 모늄을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산화제 (Oxidizer)"라 함은 GHS 분류기준에 의한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말하다.
    - ① "산화성 액체 (Oxidizing liquid)"라 함은 그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않으나,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액체를 말한다.
    - ② "산화성 고체 (Oxidizing solid)"라 함은 그 자체로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고체를 말한다.
  - (나)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등급은 GHS 분류기준에 따른다.
  - (다) "혼재 불가능 물질 (Incompatible material)"이라 함은 산화제와 접촉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거나 산화제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P - 45 - 2012

## 4. 산화제 특성

## 4.1 산화성 액체

- (1) 산화성 액체로 비중이 1보다 크며, 물에 잘 녹는다.
- (2) 불연성이지만 분자 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 연성 물질이다.
- (3) 부식성이 강하며, 증기는 유독하다.
- (4)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시 분해폭발한다.

#### 4.2 산화성 고체

- (1)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, 비중이 1보다 크다.
- (2)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.
- (3) 일반적으로 불연성이며,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다.
- (4)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, 타격, 마찰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의 접촉으로 인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.

#### 5. 저장 및 취급

#### 5.1 일반 요구사항

#### 5.1.1 산화성 액체

- (1) 물, 가연물, 유기물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.
- (2) 저장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며, 밀전 및 밀봉하여 누설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(3) 증기는 유독하므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#### 5.1.2 산화성 고체

#### P - 45 - 2012

- (1)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여야 하고,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.
- (2) 통풍이 잘되는 차가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.
- (3)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.
- (4) 가열, 충격, 마찰 등을 피하고,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.
- (5) 취급시 용기 등의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하여야 한다.

#### 5.2 저장물질의 식별

- (1) 산화제가 있는 모든 저장지역은 "등급 [등급 숫자] 산화제"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
- (2) 다른 분류의 산화제와 같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(3) 모든 저장용기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산화제의 화학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

#### 5.3 저장용기

- (1)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저장용기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(2) 대량의 산화성 액체 저장용 탱크와 대량의 산화성 고체 저장용 저장고(Bin)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  - (가) 구조물의 재질은 저장되는 산화제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- (나) 탱크와 저장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.
  - (다) 탱크와 저장고는 분해나 화재 노출로 인한 과압을 방지하기 위해 벤트나 기타 안 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5.4 저장시설

(1) 저장소 내의 산화제 배치와 양은 산화제의 등급, 용기의 형태, 저장의 형태(격리, 차단 또는 독립)를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P - 45 - 2012

- (2) 산화제는 일반 인화성 물질, 인화성 액체, 윤활유, 그리고 산화제와 반응하거나 산화제의 분해를 촉진 또는 개시시키는 혼재 불가능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  - (가) 저장된 산화제의 오염방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
  - (나) 격리된 창고에 산화제와 인화성 액체를 함께 저장할 경우 산화제 용기와 인화성 액체용기는 적어도 7.5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. 이때, 인화성 액체가 누출되어 산화제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, 배수관 또는 경사진 바닥으로 분리하여야 한다.
  - (다) 산화성 고체는 혼재 불가능 액체의 바로 아래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.
- (3) 산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경우 차단지역에서 산화성 액체가 유출되어 혼재 불가능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두 가지 이상의 분류가 다른 산화제를 격리, 차단 또는 독립된 지역에 저장하는 경우 최대 허용량은 각 분류의 산화제 최대허용량에 대한 비율의 합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 이때, 비율의 총 합량은 100 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5) 저장시설의 설계 시 현장이나 그 이외 지역을 산화제와 소화약제 및 그들의 액체 분 해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봉쇄(Containment)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6) 저장시설의 배치는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 가스의 잠재적 발생을 고려하여야 하며, 특히 저장으로 인해 수동 진압작업, 건물의 출구 그리고 인접 주거지와 마을주민의 피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(7) 산화제와 접촉할 수 있는 가연성 구조물의 재료는 호환성이 있는 도료로 도장하여 산화제에 의한 가연성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.

## 6. 화재 및 폭발 예방

#### 6.1 훈련 및 교육

(1) 각 시설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하고, 최소한 연례적으로 현장 비상조직들의 협조 하에 훈련을 하여야 한다.

P - 45 - 2012

- (2) 산화제 저장소에서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생산자와 처리업자의 권장사항을 비롯하여 물질의 안전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(3)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된 물질을 처리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.

## 6.2 난방 및 전기 설비

- (1) 저장물질이 난방설비, 배관 또는 닥트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며, 거리를 두어 산화제가 분해온도에 14 ℃를 더한 온도 또는 49 ℃ 중에서 보 다 낮은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(2) 전기설비는 폭발위험지역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6.3 흡연

- (1) 산화제를 저장하는 전 지역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2) 저장지역 내부와 모든 출입구에는 눈에 띄도록 "금연"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#### 6.4 정비 및 보수

- (1) 산화제 저장지역의 정비작업은 사전에 검토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2) 절단 및 용접 작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6.5 소방설비

- (1) 소화전과 급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질의 특성, 저장방법, 건물구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건식(Dry-pipe) 및 2중 인터록 준비작동식(Double-interlock pre-action) 스프링클러 설비는 산화제가 있는 건물 또는 지역의 보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P - 45 - 2012

#### (4) 소화용수

- (가) 소화용수는 호스와 자동 스프링클러에 의해 산화제 저장을 방호하는데 적절하여 야 한다. 이때, 급수설비는 호스를 이용하는 경우 적어도 2,840 L/min을, 자동 스프링클러의 물 수요량을 초과한 호스를 사용할 경우 1,890 L/min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.
- (나) 소화용수의 급수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- (5) 수계 소화설비(Water-based fire protection system)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, 시험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- (6) 소화기나 호스릴 형태의 수동 소화장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가) 염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산화제가 있는 곳에서는 암모늄화합물(등급 A, B, C)이 포함된 분말 소화기의 비치와 사용을 금해야 한다.
  - (나) 할론 소화기는 산화제 저장지역에 사용할 수 없다.

#### 7. 폐기물 처리

- (1) 산화제 저장지역에는 인화성 폐기물의 축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.
- (2) 누출된 산화제와 파손된 용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처리하여야 한다. 이때, 누출된 물질은 분리된 청결한 용기에 저장하여야 하고, 원래의 용기에는 다시 저장할 수 없으며,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면 안 된다.
- (3) 사용된 빈 인화성 용기는 격리된 지역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지역에 저장하여야 한다.
- (4) 일시적인 분진의 축적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(5) 화재시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젖은 수용성 산화제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 된 흡수성 가연성 포장재료와 산화제 수용액에 노출된 목재 팰릿은 안전한 외부에 옮겨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.